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556

발의연월일: 2022. 5. 12.

발 의 자:정점식·김상훈·김정재

김태호 • 박덕흠 • 안병길

이채익 • 임이자 • 조수진

홍문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어 농업협동조합법인 등의 당기순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저율로 과세하고, 농민·어민등으로 구성된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세를 감면하며, 농업·축산업·어업용 등의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적용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가 모두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가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등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전례 없는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농업협동조합 법인, 농민·어민 등으로 구성된 조합 등에 대한 현행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 임(안 제72조, 제89조의3 및 제105조).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202 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 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4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세 과세특례)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인세는 <u>2022년 12월 31일</u> 이전	<u>2024년 12월 31일</u>
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	
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	
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	
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	
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	
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	
한다)의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	
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	
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	
액에 100분의 9[해당금액이 20	
억원(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 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 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 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 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 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 8. (생략)

② ~ ⑥ (생 략)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 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 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

<u>.</u>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세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 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 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 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 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 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 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2024년 1월 1일 이후 조합 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 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제

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24년
12월 31일
<u>2</u>
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② 2026년 1월 1일
∥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9) ①
-

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1. ~ 6. (생략)
- ② (생략)

<u>2024년 1</u>
2월 31일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